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○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수당 지급액을 도내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함.

2. 관련근거
 가.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나.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

3. 주요내용
 가. 참전유공자 수당 변경 : (안 제4조 제1호)
 - “월 5만원”을 “월 7만원”으로 2만원 인상
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성주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 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합의 후 예산반영 예정
 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공고기간 2017. 3. 2. ~ 2017. 3. 22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조제1호 참전명예수당(이하 ‘수당’이라 한다) “월 5만원”을 “월 7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(생략) 1. 참전명예수당(이하 ‘수당’이라한다) 월 5만원 지급 2.(생략) 3.(생략)	제4조(지원사업)(현행과 같음) 1. ---------- 월 7만원 지급 2.(현행과 같음) 3.(현행과 같음)